

수익자총회 소집통지서

책내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대신 e-부자만들기 증권투자신탁 제 1 호 [주식]의 집합투자규약 제 37 조에 의하여 2011년 12월 9일 수익자총회를 개최예정이었으나, 의사정족수(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과반수 보유수익자 출석)미달로 인해 수익자총회가 불성립되어 연기수익자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편 드 명 : 대신 e-부자만들기 증권투자신탁 제 1 호 [주식]
2. 일 시 : 2011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00분
3.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빌딩 5층 대신자산운용(주) 회의실
4. 회의목적사항
《부의 안건》
 - 제 1 호 의안 : 주된 투자대상 자산 변경에 따른 운용전략 변경의 건
(**주식: 60%이상** 투자->주식형(**주식:70%이상** 투자) 수익증권 모펀드에 90%이상 투자)
 - 제 2 호 의안 : 신탁업자(수탁은행) 변경의 건(**국민은행->하나은행**)
(기존 수탁은행 **국민은행->주식형 모펀드의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으로 변경)
 - 수익자총회사유: 현재 소규모펀드 정리 대상인 위 펀드를 모자형 구조로 전환해 소규모펀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리작업의 일환으로 상기 의안의 승인을 목적으로 함
5.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금번 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0 조 6 항에 의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므로 동봉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여 총회일 전일(2011년 12월 21일)까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번호 : 02-769-2808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빌딩 5층 대신자산운용 마케팅본부
6. 수익자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수익자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수익자총회 참석장, 위임장(위임사실 증명서류), 대리인신분증
7. 기타사항
 - 수익자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문의 전화번호 : 02 - 769 - 3233 (대신자산운용)
8. 첨부 : 1) 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 2)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3)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4) 반대의사 통지서 및 매수 청구서, 5) 위임장
6) 연기수익자총회안내문

2011년 12월 일
대신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온기선(직인생략)

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란 대부분의 수익자가 물리적·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수익자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 등으로 수익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0 조 제 6 항에 의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익자께서는 굳이 수익자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수익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활용하시어 수익자의 의견이 펀드의 운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 1) 보내드린 통지서의 수익자총회 부의 안건을 읽어 주십시오.
 - 2) 의결권 표시 방법 : 아래의 표 '찬성 또는 반대'란에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찬,반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 3) 수익자 성명란은 기명날인(사인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 4) 수익자께서 의사표시하신 서면의결권행사 통지서를 밀봉하시어 당사 (대신자산운용(주))으로 수익자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5) 도착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모두 집계되어 수익자총회 당일 직접 참석한 수익자의 의결권과 합산되어 수익자총회 의안의 투표에 반영됩니다.

대신자산운용(주) 귀중

본인은 2011년 12월 22일 개최되는 '대신 e-부자만들기 증권투자신탁 제 1호 [주식]'의 수익자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0 조 제 6 항에 의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로 행사하고자 합니다.

수익자명	(인)		수익자총회 참석장상의 수익자정보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유좌수			
제 1 호 의안	주된 투자대상 자산 변경에 따른 운용전략 변경의 건	찬성	
		반대	
제 2 호 의안	신탁업자(수탁은행) 변경의 건	찬성	
		반대	

2011년 월 일

성명

(인)

수익자명과 성명란에는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제 1 호 의안 : 주된 투자대상 자산 변경에 따른 운용전략 변경의 건

변 경 전	변 경 후
<p><주된 투자대상 자산></p> <p>1. <u>주식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u></p> <p>2. <u>채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 투자</u></p>	<p><주된 투자대상 자산></p> <p>1. <u>대신 행복나눔 SRI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 수익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상 투자</u></p> <p>2. <u>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및 금융기관에 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투자</u></p> <p><u>주)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주식: 7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u></p>
<p><운용전략></p> <p>➢ <u>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우량주식, 가치주식 및 고배당 주식을 중심으로 장기투자하여 고 수익을 추구합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기업가치의 차별적 반영과 주가의 차별화 된 상승을 반영, 업종대표주에 투자</u> - <u>세계 상위 5 위 이내의 사업부문, 품목 보 유 기업, 국내 1 위 기업</u> - <u>기업가치와 더불어 성장성, 수익성이 업종 평균/시장평균 이상인 기업</u> - <u>고배당기업 및 현금창출능력이 우량하여 주주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기업</u> - <u>지배구조가 우량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기업.</u> <p>➢ <u>채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내에서 금리전망에 따라 채권만기를 고려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주력하며,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 선물옵션 및 CD금리선물을 이용하여 자산가 격하락 위험에 대처합니다.</u></p> <p>➢ <u>어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하로 투 자합니다.</u></p> <p>➢ <u>투자자산간 또는 투자자산내에 분산투자 및 손절매 제도 시행으로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u></p>	<p><운용전략></p> <p><u>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 로,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주로 환경,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국내 기업의 주식에 선별 투자(사회책임투자)하여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추 구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대신 행복나눔 SRI 증 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90%이상을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대신 행복나눔 SRI 증권 모투자 신탁(주식)]의 수익증권에 신탁재산 90%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 자신탁의 운용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u>< 주식형 모투자신탁[대신 행복나눔 SRI 증권 모투 자신탁(주식)]의 운용전략></u></p> <p style="text-align: center;"><u><별 첨></u></p>

제 2 호 의안 : 신탁업자(수탁은행) 변경의 건

변 경 전	변 경 후
<u>(주) 국민은행</u>	<u>(주) 하나은행</u>

< 별첨 >

< 주식형 모투자신탁 [대신 행복나눔 SRI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운용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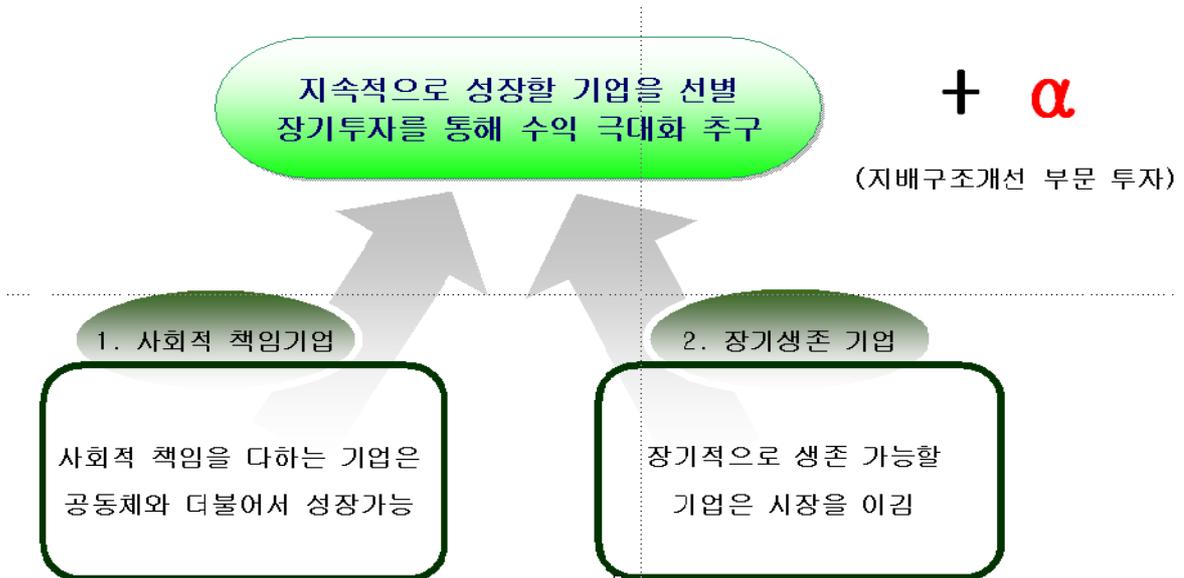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주로 환경,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국내 기업의 주식에 선별투자(사회책임투자)하여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대신 행복나눔 SRI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포트폴리오의 구성조건(예시)

-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기업
-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
- 친환경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기업
- 사회책임을 하면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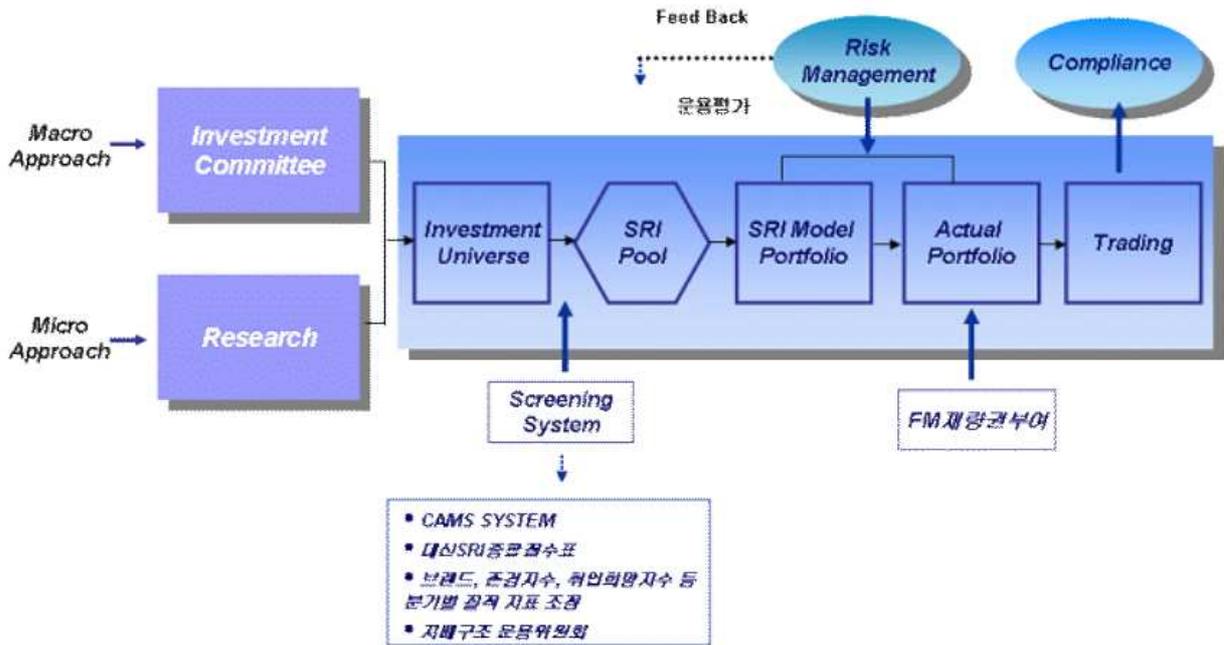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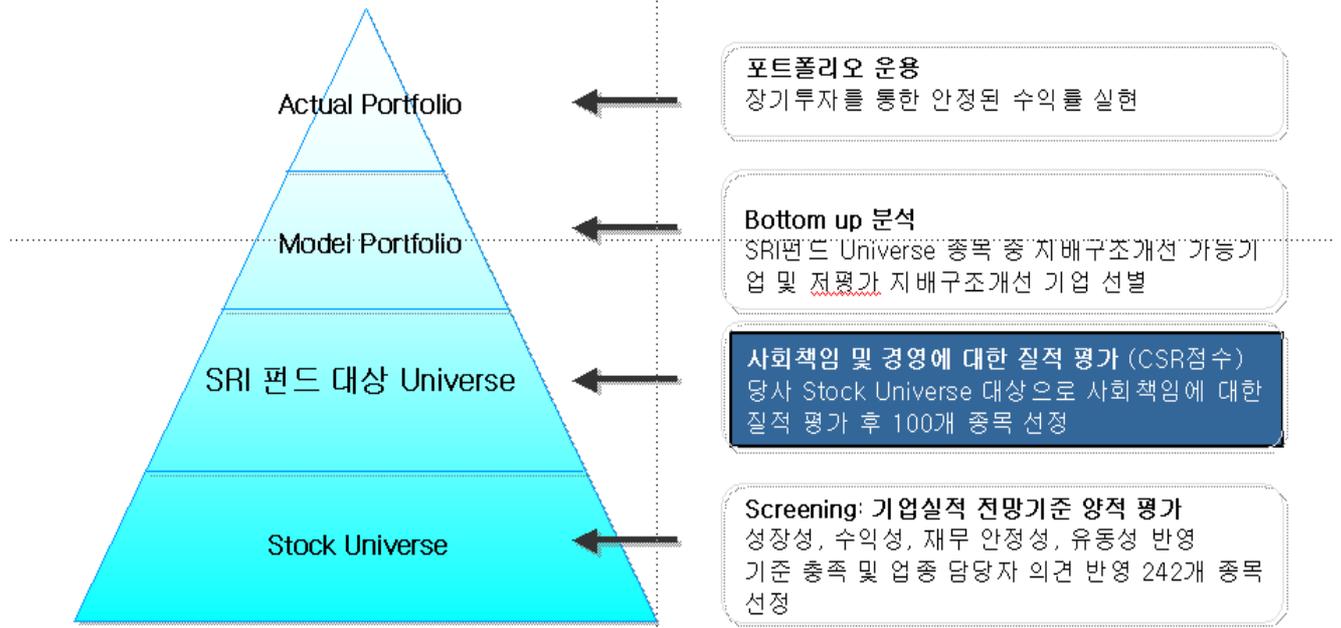
▶ 펀드 운용의 기본 개념

- SRI(사회책임투자) 펀드 본연의 특징 및 강점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운용
- 기업의 펀더멘탈 +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부분을 감안하여 투자
(☞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SR 을 취하는 기업은 이해관계자(투자자, 소비자, 종업원, 금융기관 등)들과 공존하면서, 기업의 본래 목적인 지속적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접근
- 반면, CSR 을 인식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잃음으로 인해 도태될 가능성이 높음



▶ 대신 행복나눔 SRI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세부 전략

□ 재무적 양적 평가 + **사회책임 및 경영에 대한 질적 평가**



※ 비교지수 : KOSPI200 X 90% + CD 금리 X 10%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1.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1 조에 따라 해당 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께서는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인 **2011년 11월 18일** 현재 수익자명부에 등재된 수익자로서 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소유 증권을 계속 보유하고, 다음 행사요령에 따른 절차를 취하셔야 합니다.

2. 매수청구권 행사요령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반대의사 통지** 및 **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가. 안건(신탁약관의 변경 등)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반대의사 통지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 명부수익자는 총회전까지 대신자산운용회사에 ▲ **실질수익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수익자, 이하 “실질수익자”라 함)는 총회일 2영업일전(2011년 12월 20일)까지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권 행사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승인된 경우에는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한 수익자에 한하여 ‘매수청구서’(붙임양식)를 작성하여 ▲ 명부수익자는 매수청구종료일(2012년 1월 11일)까지 소유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대신자산운용회사에 ▲ **실질수익자는 매수청구종료일 2영업일전 (2012년 1월 9일)까지 판매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매수가격과 지급예정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1 조 3 항 및 동 시행령 제 222 조에 의거하여 매수가격은 **2012년 1월 12일**의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매수대금은 **2012년 1월 16일**부터 거래하는 판매회사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수익증권 매수가격의 조정신청 절차 (주의 요망)

투자신탁재산은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탁은행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수탁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에서 매수가격이 정해짐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2 조) 별도의 매수가격 조정신청절차는 없음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매수청구 종료일 이후에는 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실질수익자의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사무업무처리 일정에 따라 ‘총회의결 반대의사 통지서’ 및 ‘수익증권 매수청구서’ 제출시한 1~2일 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명부수익자의 ‘총회의결 반대의사 통지서’ 제출처
 - . 자산운용회사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빌딩 5층
대신자산운용주식회사 마케팅본부
 - . 전화번호 : 02-769-3233
 - . 팩스번호 : 02-769-2808

(반대의사 통지서 및 매수 청구서)

총회 의결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대신 e-부자만들기 증권투자신탁 제 1 호 [주식]의 총회 의결사항(안건 기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수익자번호	
소유증권수	좌
반대의사표시증권수	좌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대신자산운용(주) 대표이사 귀하

=====절 취 선=====

수익증권 매수 청구서

본인은 귀사의 대신 e-부자만들기 증권투자신탁 제 1 호 [주식]의 총회 의결사항(안건 기재)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수청구를 청구합니다.

수익자번호	
소유증권수	좌
반대의사표시증권수	좌
매수청구 증권수	좌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대신자산운용(주) 대표이사 귀하

** <연기수익자총회가 소집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0 조 7 항에 의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수익자총회를 소집한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연기수익자총회 결의 방법>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0 조 제 5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